

예술인 고용보험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요율 인하

- '21. 7. 1.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요율 인하 1.6% \Rightarrow 1.4%

구분		종전('21.6월 이전)	변경('21.7월 이후)
실업급여 요율	합계	1.6%	1.4%
	사업주 부담분	0.8%	0.7%
	예술인 부담분	0.8%	0.7%

- '21. 7월 이전 취득자의 상실일이 '21. 7월 이후인 경우 보수총액 구분신고 필요

(예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일 2021.2.1.", "상실일이 2021.9.1."인 경우

기간	보수 총액	사업주 부담분(①)	예술인 부담분(②)	보험료 합계(①+②)
2021. 2. 1.~ 6. 30.	5백 만원	5백만원*0.8%= 40,000원	5백만원*0.8%= 40,000원	80,000원
2021. 7. 1.~ 8. 31.	2백 만원	2백만원*0.7%= 14,000원	2백만원*0.7%= 14,000원	28,000원

※ 보수총액 구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상실신고 시 기재된 보수총액을 피보험기간에 따라 나누어 정산

- 2021년에 계속 종사하는 예술인의 경우는 2021년도 보수총액 신고 시 1~6월 보수와 7~12월 보수를 구분하여 신고

보수총액 구분 신고하는 방법

- ▶ 전자 신고할 경우(토털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
 - 상실신고 후 별도 메뉴 (민원접수/신고⇒보수신고⇒고용종료근로자 보수총액 구분 신고서)에서 신고 가능
- ▶ 서면 신고할 경우 첨부된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구분 신고서" 서식 활용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상한액 신설

- '21. 7. 1.부터 개인별 보험료(사업주 부담금 + 예술인 부담금) 상한액 월 441,150원, 연간 5,293,800원으로 적용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예술인가입부(☎02-2097-9250)로 문의하세요.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추가 안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적용자)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적용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아닌 타(他)사업장에서 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제외
- 적용제외 대상(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 ③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적용제외 대상이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취소 및 과납 보험료 반환 신청 필요

피보험자격 취소 신청 방법

▶ 전자 신청할 경우(고용산재토탈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

- ① 일반예술인은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
- ② 단기예술인은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 및 취소 신고

▶ 서면 신청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취소신청서” 및 “일용 근로내용 정정취소 신청서” 서식 활용

※ 피보험자격 취소 후 과납보험료는 별도의 반환 신청이 없을 경우 향후 발생하는 보험료에 충당됨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지원대상 :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 지원율 : 80%(근로자 10명 미만 사업, 예술인 수 제한없음)
- 지원기간 : 예술인 별 36개월(근로자 지원기간과 별도)
- 지원제외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6억원 이상, 전년도 종합소득 연 3,800만원 이상
- 합산관련 : 예술인간 합산해서 220만원 미만이어야 지원(근로자이력과 합산하지 않음)
※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지원신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서식자료」에서 양식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팩스 0502-223-3203으로 제출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예술인가입부(☎02-2097-9250)로 문의하세요.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관련 문의

-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콜센터)

“일하는 생애를 아우르는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연장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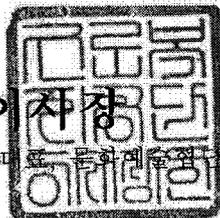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초기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피보험 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기간) 2021.07.01. ~ 2021.09.30.(3개월)
- (적용사업장)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쏠 사업장
- (적용대상)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상실 등)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적용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면제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3. 아울러,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협조요청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수신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 52개소

차장대우	박나선	차장	전정필	부장	전결 07/05 이근열
협조자	국민고용안전망강화추진TF팀-1730	(2021.07.06.)	접수	/	
전화	0527047236	전송	/nasun@kcomwel.or.kr	/	비공개(5, 7)